

대구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185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1856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가단11573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유신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승규

변론종결 2024. 7. 11.

판결선고 2024. 9. 1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가단11573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에 별지 '채권 목록' 기재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2020. 12. 3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2) 피고는 E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20. 12. 31.자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20. 12. 31.자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E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합성수지, 부직포 등의 도매업 및 무역업에 종사하는 'F'의 공동운영자들로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위 회사들을 합쳐서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자이다.

2) 소외 회사들은 합성수지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두 회사 모두 H이 경영하는 회사로 주소, 업종 및 직원이 동일하다),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자이다.

3) 피고는 2020. 12. 15.부터 2021. 3. 3.까지 G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D으로부터 D의 E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자이다.

나. 원고들의 소외 회사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발생

1) 원고들은 2019. 12. 4. G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12. 22.까지 엘디피이(LDPE) 등을 공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공급된 물품대금 중 잔액은 합계 48,015,550원이다.

2) 원고들은 2020. 1. 31. D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5. 19.까지 엘디피이(LDPE) 등을 공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공급된 물품대금 중 잔액은 합계 274,727,521원이다.

다. 선행소송의 조정 성립

원고들은 소외 회사들과 H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8349호, 이하 ‘선행소송’라 한다), 위 선행소송에서 2022. 5. 31.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선행소송 조정’이라 한다). 선행소송 조정의 주요 내용은 “소외 회사들과 H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억 7,000만 원을 2022. 8. 1.부터 매월 7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2회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원금에다 6,000만 원을 더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 이익 상실 다음날 이후의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라. 물품대금 일부 지급

소외 회사들은 선행소송 조정에서 분할지급하기로 한 돈 중 2022. 8. 1.부터 2023. 5. 12.까지 합계 6,3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추가 지급을 하지 않았다.

마. D의 채권양도

- 1) D은 E에게 부직포 원단을 공급하여 3억 3,5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 2) D은 2020. 12. 31. 피고에게, 별지 '채권 목록' 기재 물품대금채권(D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3억 3,000만 원)을 양도하고, 2021. 1. 4. E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하고, 위 채권을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 1)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원고들은 2021. 8.경 D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하였고, 당시 코로나 보호복의 제조원료인 부직포원단의 가격이 폭락하여 D이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D의 무자력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D이 2021. 10. 26.경 선행소송의 증거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통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사실과 D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3. 4. 13.에 제기되었다.
- 2) D이 선행소송 조정에서 채무를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21카단34325호로), 위 가압류는 2021. 8. 19. “D의 작업장 내에 있는 D의 동산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된 사실, ② D이 2021. 10. 26.경 선행소송의 증거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통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용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불능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통지서 입수로서 2021. 10. 26.경 이 사건 채권양도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고,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D의 재산상태 전반을 조사하였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D이 주로 취급하는 부직포원단의 시장 가격이 폭락하였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나아가 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원고들이 D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과정에서, D 사업장 내 유체동산들이 금전적 환가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통상적으로 기업이 가진 자산 중 유체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다).

③ 오히려 원고들은 선행소송의 계속 중에 소외 회사들의 인적 자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으로부터 2022. 5. 19.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을 받고, 2022. 5. 25. 피고가 G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채무 면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4. 13.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채무 이행 중인 채무자라도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선행소송 조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 경우 ① 주위적으로,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 2,100만 원(= 2억 7,000만 원 - 2023. 3.까지의 변제금 4,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으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과 피고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양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D, 피고가 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채권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 A의 청구 부분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20. 5. 19.경까지 D에 대하여 274,727,521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2. 5. 31.자 선행소송 조정과 D의 일부 지급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하여 “합계 267,000,000원(= 선행소송 조정 결정액 270,000,000원 + 선행소송 조정 미이행 가산금 60,000,000원 - 변제금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5.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채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당초 물품대금 채권 274,727,521원은 2021. 1. 4.자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D의 채무초과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란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의 소극재산은 합계 570,000,000원

이상이었던 반면, D의 적극재산은 최대 528,0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D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적극재산인 이 사건 양도채권의 양도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소극재산		적극재산	
원고 A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270,000,000원	E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335,000,000원
주식회사 K에 대한 대출금 채무(갑 제14호증)	300,000,000원	주식회사 J에 대한 채권(을 제7호증)	193,000,000원
합계	570,000,000원	합계	528,000,000원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2020년도 표준대차대조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표준대차대조표’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D은 1,190,750,186원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706,142,474원이었을 뿐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인용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표준대차대조표에는 2020. 12. 31. 기준 D의 자산총계가, ‘유동자산 911,640,340원(외상매출금 등 당좌자산 399,227,495원, 제품 및 원재료 등 재고자산 501,005,000원, 기타 유동자산 11,407,845원)’과 ‘비유동자산 279,109,846원(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 268,909,846원, 기타 비유동자산 10,200,000원)’의 합계인 1,190,750,18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이 사건 표준대차대조표상의 계정 항목들에 나타난 자산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의 경우 종류, 변제기, 담보 제공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용이하게 환가될 수 있는 재산이라거나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표준대차대조표에는 D의 재고자산(제품, 원재료)이 501,005,000원,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가 194,249,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8. 19. 대구지방법원 2021카단34325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과정에서, D의 사업장에 위치한 유체동산의 경우 그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집행과정에서 D의 운영자인 H은 “위 집행장소내에 있는 기계는 모두 G의 소유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재고자산, 유형자산 항목은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D은 원고 A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274,727,521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고, 선행소송 조정제에 따라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2023. 5.경 이후로는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D에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D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적극재산으로 임대차보증금 채권 3,500만 원, L에 대한 조정금 채권 82,136,1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2(조정조서), 을 제9호증(부동산월세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 및 위 조정금 채권의 채권자는 모두 G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D이 위 각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않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 A을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A과 D의 관계, D과 피고 및 E과의 관계, D의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D의 사해의사는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D과 피고가 E, M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소송[대구지방법원 2021가합88(본소), 2022가합205019(반소),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2014. 1. 3.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화해권고결정 이유는 “D과 피고(위 사건의 원고 C)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D의 물품대금 채권과 E(위 사건의 피고) 손해배상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본소와 반소를 모두 취하하고, 위 당사자들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② 피고는 2020. 12. 15. G에서 직장의료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D과 G은 모두 H이 경영한 회사로 주소, 업종 및 직원이 동일한 회사로서, D과 피고는 긴밀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피고는, “피고가 D 또는 G의 직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20. 12. 29. 주식회사 J에 대하여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D의 대리인으로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대리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피고도, “D이 피고로부터 장차 3억 5,000만 원을 차용키로 하면서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대상인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는 위 돈을 대여해준 바 없어 채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직후인 2021. 1. 4. D으로부터, D이 피고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받았는데, 위 공정증서에 의하면, 채무금이 3억 5,000만 원임에도 채무부담일인 2020. 12. 31.로부터 변제기한이 2021. 1. 11.로서 불과 11일밖에 되지 않는 등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⑤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는 D이 실제로는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D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3억 3,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해당한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D, 피고가 이 사건 양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모두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채권은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장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화해권고결정은 관련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원고 A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데, 원고 A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양도채권의 실제 가치가 3억 3,500만 원 상당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위 화해권고결정 또한 D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자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제한 다음, 관련 소송의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여 그들 사이에서만 서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② 한편 위 화해권고결정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D이 이 사건 양도채권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③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채권은 원고 A에 대해서는 그 외관과 같이 약 3억 3,500만 원 상당액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원상회복의 방법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원상회복 방법으로는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않은 때에는 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 된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때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원고 A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주위적으로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로부터 아직 위 채권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원상회복은 예비적 청구와 같이, 채권의 양수인인 피고가 제3채무자인 E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E로부터 이미 채권을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다. 원고 B 청구 부분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행사할 수 없다면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1541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판결 등 참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2022. 5. 31. 원고들이 D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2억 7,000만 원을 원고 A에게 모두 지급하는 내용의 선행소송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B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포기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소멸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원고 B의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B의 주위적 ·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현, 판사 곽동훈, 판사 김대현

별지